

보도시점 2025. 12. 3.(수) **배포 시** 배포 2025. 12. 3.(수) 16:00

##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속 예찰·검사 결과, 이상없어..

- 추가 역학농장 임상정밀검사, 전국 양돈농장 예찰, 민간 검사기관 시료 검사 등 이상없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라,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 11월 24일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10월초부터 폐사 등이 있었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시료 검사결과 양성 추가 확인(11.28.)

중수본은 10월초 이후 추가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임상·정밀검사, 예찰을 추진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에 대한 1·2차 임상·정밀검사와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 소재 종돈장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둘째, 전국 양돈농장(5,112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개별 농가 단위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① 3일간 발열(39.5°C 이상) 증상 ② 40.5°C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전연령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 보일 경우 등에 대한 임상 증상 발생 여부 확인

셋째, 10.1일부터 11.28일까지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 돼지 폐사체를 병성감정 의뢰한 농가(264호 1,202두)\*에 대한 정밀검사(11.28~12.2)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다.

\* 검역본부 : 198호 542두, 지방정부 : 66호 660두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기존 방역대·역학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농장주는 매일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임상 예찰을 실시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폐사가 발생하거나, 발열, 식욕 부진, 청색증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돈 농가를 출입하는 모든 축산 관계자 및 축산차량 등은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차량·대인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휴대하고, 농장을 출입할 때마다 소독과 장화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기준 1부.

담당 부서 (ASF)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김정원 (044-201-2537)

**1 신고기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

※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①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2 신고절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등 시행